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 1. 1.

우리동네재가노인복지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동네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정: 기관의 직원과 수급대상자는 이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기관발전과 직원과 수급대상자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4조 목적: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간을 두고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5조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이상 공용하여야 한다.

제6조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 수급자 모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활용한다.
2.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 한다.
3.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 관할 관공소 및 기관에 비치한다.
4.인터넷 홈페지 및 지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1.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를 기본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수급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겨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비용청구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정산하여 청구한다
5.계약해지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 전원등 계약해지 사유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는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는지 확인할 권리기 있다

*신원수급인는 센터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8조 이용비용 및 수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월 이용

2024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안내문						
(아래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 요양 시간당 금액 참조)						
▶ 2024년 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2024년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료

분류	수가 (100%)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감경(40~9%)	본인부담금 감경(60~6%)
30분	16,630	2,495	1,497	998
60분	24,120	3,618	2,171	1,447
90분	32,510	4,877	2,926	1,981
120분	41,380	6,207	3,724	3,083
150분	48,250	7,238	4,343	2,895
180분	54,320	8,140	4,889	3,259
210분	60,530	9,080	5,448	3,632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 2024년 방문목욕 이용료

구분	목욕차량이용(차량내목욕)	목욕차량이용(가정내목욕)	목욕차량미사용
회당	84,670	76,340	47,670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오전6시 이전→ 심야는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2. 그 밖의 이용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행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 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매년 12월 말경 차기 년도 바뀐 수가변경 내용을 고지한 장기용급여이용서비스변경 계약서를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부본 1부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여변경 대였을 경우나 수가변경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1. 노인장기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 샐활에 필요한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따르라 제공한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 활동 등의 일상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표준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라입히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그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인장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요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변경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당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다음 월에 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임금 일까지 기관 우리동네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임금 한다.

2. 이용자는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임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